대구소년원 공고 제2026-27호

2026년 제2회 법무부 대구소년원

공무직근로자(남성감호실무관) 채용 공고

법무부 대구소년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남성감호실무관) 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대 구 소 년 원 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공무직근로자 (남성감호실무관)	1명	- 보호 및 위탁소년 감호업무 - 경비 및 방호업무 등	대구소년원

※ 대구소년원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 12

2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정년 60세)

○ 근무시간 : 교대근무(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 주간근무시간 (09:00~18:00), 야간근무시간 (18:00~익일 09:00)

※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2시간

○ 보수기준 : 월 229만원 상당(세전, 기본급, 정액급식비 포함)

※ 휴일, 야간수당 등 별도 지급

○ 후생복지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름

○ 기 타 :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속 기관 변경은 근로자 및 기관 간 협의될 경우 가능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응시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 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2.「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37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결격 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 남성(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학력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공무원임용령」 제4조2항8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외국국적 포기 시 임용 가능함**

○ 대구광역시 및 인근 거주자로 대구소년원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5038호)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자격요건

○ 3단 이상 무도 단증 소지자

< 무도단증 인정기준 >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11개)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 **충족한 단체** : 경찰청 체력시험 점수 인정 48개 단체**(별첨 참조)**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 택견보존회

* 응시 자격요건 해당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사항(적극적 서류 전형에 해당)

○ 자격 요건 외의 무도 단증 소지자 : 인정 기준은 자격요건 기준과 동일

※ 자격 요건으로 제출된 무도 단증 제외한 무도 단증에 한하여 적용

■ 경비지도사(경비업법 제11조)

■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소지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 청소년지도사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청소년 기본법 제21조)

■ 청소년상담사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청소년 기본법 제22조)

■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공고일 이전의 실적으로 최근 5년간 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발행「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 발행「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봉사활동 실적은 일시 및 내용이 포함된 상세내역서 제출
 ※ 봉사활동 실적시간 중 ‘헌혈’ 시간은 봉사활동 실적시간에서 제외함
- 헌혈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 발행한「헌혈확인증명서」

* **우대 요건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5 시험방법(서류전형, 면접 등)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응시인원 10명 이하인 경우)

- 응시 인원에 관계없이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응시인원 11명 이상인 경우)

- 위원이 담당업무 적합한 기준에 따라 종합·서면 심사 후 **10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선발예정 인원에 포함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무도단증,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청소년상담사자격증,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 자격요건으로 제출한 무도 단증은 제외**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항목을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①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 공무직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를 평정 시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 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⑥ 채용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026. 10. 1.(목) ~ 10. 8.(목)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2026. 10. 6.(화) ~ 10. 8.(목)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 접수처 :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 ※ 온라인 접수 불가 ※ 우편 접수의 경우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16.(금)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6. 10. 23.(금) 예정	○ 장소 : 대구소년원 2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30.(금) 예정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점검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본 공고문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8.(금)
- 접수시간 :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 12 (우 41442)	053-260-7267	인사담당자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에 **직접 방문(대리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표기, 택배 및 퀵서비스, 인터넷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7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비 고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5	주민등록초본	응시연령 확인
6	자격증 사본(무도단증 3단 이상)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품증은 단증으로 전환 발급하여 제출	응시자격 확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8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10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1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12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13	최종학위(졸업) 증명서 사본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 학위(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제척 확인용으로만 사용,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14	기타 우대사항(자격증, 경력, 봉사·헌혈 실적) 증명서	원서접수 마감일 내 제출

※ 사회봉사, 헌혈 실적은 공고일 이전의 5년 실적만 인정

8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3일 전까지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을 준용하여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2조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로 제출(최종합격자 발표 공고문에서 정한 기일까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후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에서 합격자 1명과 예비합격자로 면접시험 차순위자 2명 선발 예정)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별지 제11호 서식)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0. 30. ~ '26. 11. 30.**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 인사담당자 (☎ 053-260-7267, 260-7200). 끝.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법무부 대구소년원에서 실시하는 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남성감호실무관)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3년간 법무부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구소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남성감호실무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남성감호실무관)**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대구소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대구소년원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해당여부 : '해당', '해당 없음'으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 소				
연 락 처				

경력	근무기간 (년 월)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자격사항	취득년월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병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

상훈	일 자	종 류	사 유	발령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남성감호실무관)

지 원 동 기	
성 장 과 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 타 사 항	
20 . . . 작 성 자 : (인/서명)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①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불가하며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②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남성감호실무관)

20 . . . 작 성 자 : (인/서명)

【작성요령】

①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불가하며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② 근무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분야 이해도, 업무추진전략 등을 성실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직근로자(남성감호실무관)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국적, 병역, 학력(학교명 등 포함), 자격·경력·학위 등	**공무직근로자 (남성감호실무관)**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공무직근로자 (남성감호실무관)** 채용 관리	**5년**

※ 위의 고유실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범죄경력자료	공무직근로자 채용 관리	**5년**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직근로자 채용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직근로자 채용관리	**자격, 경력, 단증** 등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공무직근로자 채용관리 (비위면직여부조회)	비위면직 해당여부 확인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사혁신처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소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대구소년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직근로자(남성감호실무관) 응시결격 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2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7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소년원 직원 중 친인척 관계가 있다. (유 : □, 무 □)
 - 친척 관계에 있다면 () 촌 이내의 관계이며, ()에 근무 중인 (성명 :) 이다.

 ※ 친인척(민법상 친족)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배우자의 4촌 이내의 인척 포함)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생각한다 : □ / 생각하지 않는다 : □)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유 : □, 무 □)
 - (파면 : □ / 해임 : □)된 사실이 있으며, 소속 기관 ()에서 (20 년 월 일)자로 퇴직하였다.
 -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거나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생년월일 :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여부 조사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대구소년원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여부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대구소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대구소년원(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 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강 북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해당사항이 발견될 시 채용 취소 및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등)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대구소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 반환 청구할 서류 반드시 기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소년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인정 무도단체 현황(60개)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1)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민국합기도연합회 구)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세계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대한검도연합회, 한국무예진흥원,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대한신무합기도협회는 대한민국합기도연합회로 단체 명칭 변경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